

■ 공정거래 위반 점검

*점검결과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 요약기술 요
 이상없는 경우 "특이사항 없음" 기재 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기 요
 *조치내용 : 점검결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조치가 있는 경우 내용기재 요.

구분	Check -Point	점검결과	조치내용
불공정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건,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적 취급]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행위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사업자 배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합하는 행위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강제] 사업자가 끼워팔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속조건부 거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 담합방지 점검

*점검결과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 요약기술 요
 이상없는 경우 "특이사항 없음" 기재 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기 요
 *조치내용 : 점검결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조치가 있는 경우 내용기재 요

구분	Check -Point	공정위 시각/해석	점검결과	조치내용
입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 전 독자적으로 사전에 결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가? - 설계사와 독자적으로 검토한 자료 등 	•사업적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과정과 절차상 근거 (경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 전 작성된 참여사 현황자료에는 정보출처가 표시되어 있는가? 	•명확한 정보출처 표기 필요 (경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경쟁사 조직도, 담당현황, 동종사 모임 현황, 업체 모임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담합과 직접관련 없는 정도라도 지속적인 의사연락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공동행위를 위한 상시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에 경쟁회피, 경쟁해소 등 오인 용어 사용 사용하고 있는가? - 경쟁/비경쟁, 완화/심화, B설계(들러리설계), S (sidekick 들러리) - 공구 중 고딕체로 진하게 표시 (입찰전) - 원안/대안 강제 차등 - 자율조정, 빅6* 전략적 제휴/전략적 참여 - 업계간 협의 강화, 협력관계 구축 - 비경쟁 수주로 전년대비 4배 실적 상승 등 	•보고서에 경쟁회피, 경쟁해소 했던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한 경우 법인 차원의 조직적인 공동행위 실행 및 결재자에 따라 고위임원 가담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입찰 진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 진행중 참여사 현황을 작성하거나 정리하였는가? - 입찰일 가까울수록 낙찰사 일치 / 낙찰 예정자에 굵은 글씨, 색깔, 동그라미 등 표시 	•공구 분할 및 공구내 담합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첩, 달력, 트위터, 메신저, 회계데이터 등에 공동행위(담합) 오인 협의내용 등을 기재 하였는가? - 업무수첩에 (낙찰사/들러리 등) 오인 협의내용 기재 - 입찰 전 경쟁사 모임 내역 기재 (출장비 전표, 출장보고 등) 	•담합을 위한 모임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 진행중 모임 참여 등 오인 행위를 하였는가? - 모임에 참석하여 각 사가 원하는 공구 정보 교환 - 정보교환을 통해 각 사별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협의 - 전화로 들러리 부탁/들러리 대가로 공동수급사업참여 조건을 논의 - 관심 공구를 의도적으로 업계에 공유(협회, 신문 등) 하였는가? 	•합의 등 명시적 직접증거 뿐 아니라 묵시적/암묵적인 양해 등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하는 정황증거도 증거가 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입찰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 기술특화 등 차별화된 경쟁력 요소가 기술된 자료, 투찰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경쟁 용어를 사용하여야 오해가 없음 (경쟁근거) - 특화, 경쟁력, 기술, 품질, 자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주 성공/실패 요인 분석서가 있는가? (투찰가 분석 포함) 	•소송시 중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경쟁근거)		
정보교환 담합 (전화, 이메일, SNS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는 경쟁사의 가격, 원가 및 입찰 조건 등 입찰 중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의 민감한 정보를 경쟁사 등과 교환하였는가? 만약, 교환한 경우 중단 후, 상대방에 정보교환 중단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근거 남겼는가? - 경쟁사로부터 오픈된 정보 접수 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 - 정보교환 중단 시, email, SNS, 통화보고 등 중단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 후 CP담당과 협의한다. 	•외형상의 일치, 일치에 필요한정보교환이 있는 경우 담합으로 추정됨		
협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받은 경쟁사와의 모임 또는 면담 중 담합오인 이슈 논의 시, 참석이탈 선언 후 자리에서 나와 CP담당자에게 보고하였는가? - EX. 입찰가 협의, 공구배분 등 	•담합을 의도하는 정보교환과 외형상 일치만으로도 담합추정 가능, 실행하지 않아도 법 위반성립 •묵시적, 암묵적 양해도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약관 점검

*점검결과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 요약기술 요
 이상없는 경우 "특이사항 없음" 기재 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기 요
 *조치내용 : 점검결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조치가 있는 경우 내용기재 요.

구분	Check -Point	점검결과	조치내용
일반원칙 (공정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가?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없는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면책조항의 금지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없는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없는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없는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없는가?		
계약의 해제/해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없는가?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없는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없는가?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없는가?		
채무의 이행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없는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없는가?		
고객의 권익보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없는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없는가?		

의사표시의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고객의 의사표시로 보는 조항은 없는가? - 단,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은 없는가? 		
대리인의 책임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은 없는가? 		
소송 제기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없는가? 		
약관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관 변경 사유 및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 고객에게 약관 변경에 대해 고지하거나 안내하였는가? 		
개별약정의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과 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을 개별약정보다 우선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행위는 없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관 중에서 "이와 다른 개별약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구두에 의한 합의는 모두 무효)"라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가? 		

■ 재개발재건축 점검

*점검결과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 요약기술 요
 이상없는 경우 "특이사항 없음" 기재 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기 요
 *조치내용 : 점검결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조치가 있는 경우 내용기재 요.

구분	Check -Point	점검결과	조치내용
입찰형태 (수주기획사 및 홍보인력사 인건비)	•인건비가 정상 집행되고 있는가?(체불)		
	•실제 인건비 지급 주체는 있는가?(허위 계상)		
	•업계 평균 인건비보다 과다 지급하지 않았는가?(과다 계상)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의 목적으로 자금 조성의 흔적이 있는가?		
입찰형태 (판촉물비)	•도시정비법 등 관계법상 허용되는 판촉물만 지급하고 있는가?		
	•판촉물 내역서와 인수증이 상호 일치하는가?(허위 계상)		
	•도시정비법 등 관계법상 저촉되는 물품은 지급하고 있지 않은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의 목적으로 자금 조성의 흔적이 있는가?		
입찰기준 (공통)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유상으로 처리한 것은 없는가?		
	•제안 기준 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 항목은 없는가?		
입찰기준 (입찰지침서)	•입찰참여지침서의 입찰무효 각호 항목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가?		
	•특화 또는 대안물량 내역서 작성시 원안 설계와 구분하여 그 품목의 규격, 수량 금액 등을 작성하였는가?		
	•발주자가 제공한 아파트 마감 및 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입찰기준 (입찰제안서 작성)	•입찰제안서 작성 시 상품개발팀, 주택건축팀 등과 협의 완료된 마감, 견적 등을 제안하였는가?		
입찰기준 (관련법 준수)	•입찰제안서 내에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8.02.09) 제 30조(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금지 등)에 위반하여 제안한 사항은 없는가?		

■ 하도급 점검

*점검결과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 요약기술 요
 이상없는 경우 "특이사항 없음" 기재 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기 요
 *조치내용 : 점검결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조치가 있는 경우 내용기재 요.

진행단계	구분	Check -Point	점검결과	조치내용
계약전	계약방식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하도급 계약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용역계약으로 처리한 건이 있는지 점검하였는가?		
	부당특약 설정	•표준현장설명서 조건 이외의 현장에서 추가한 특기사항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이 있는가?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허가,민원처리,품질/환경관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 비용전가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전가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제한하는 약정 여부		
	•인가된 USB/외장하드 사용 시 저장된 모든 파일내용 점검			
계약	계약체결	•하도급 계약 체결전 공사를 착수한 건이 있는가?		
		•소액공사의 대금지급시 계약서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계약공기가 해당월에 종료되는 건(준공되는 계약)의 잔여 공사는 없는지 점검하였는가? (계약잔액 여부, 추가공사 발생 가능 여부)		
		•하도승인 완료 후 수급사업자와 전자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건(계약서가 작성되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되었으나, 계약승인 되지 아니한건)이 있는가?		
	설계변경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 조정하였는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였는가?		
		•하도급 (변경)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 건설공사대장(KISCON)에 (변경)계약사항을 통보하였는가?		
	ESC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 조정하였는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E/S 비율 보다 정당한 사유없이 낮은 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E/S를 반영한 건은 없는가?		
		•발주자로부터 E/S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았으나, 하도급 계약 수급사업자에게만 E/S를 반영하고 자체 계약 (제조위탁) 수급사업자에게는 E/S를 미반영하였는가?		
		•발주자로부터 기성수령시 마다 E/S를 계상받았으나(ex.SOC현장) 수급사업자에게는 E/S를 미지급한 건이 있는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 것에 대한 소명 근거자료를 마련하였는가?			
	•작업지시서를 불완전 서면으로 교부하였는가? (하도급대금/수량, 지급방법, E/S조정 방법 등 미표기, 서명 누락)			

공사 중

작업지시서 (서면교부)	•긴급복구공사 등의 정당한 사유로 불완전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 미확정 사유와 확정 예정기일을 지정하였는가? 확정시 수정 교부 하였는가?		
	•작업지시서를 지연교부하였는가?		
	•작업지시서를 미교부하였는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내용을 서면통지하여 확인 요청시 15일 이내 의사를 회신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미회신시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선금금 지급	•발주처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는가?		
	•발주처로부터 선금금을 받았으나, 하도급 계약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금금을 지급하고 자재계약(제조위탁)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을 미지급하지는 않았는가?		
	•발주처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는가?		
	•발주처로부터 선금금 수금시 지체없이 유관부서(외주팀 등)에 통보하였는가?		
	•발주처로부터 선금금 수금시 지체없이 유관부서(자재구매팀 등)에 통보하였는가?		
	•선금금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계약건의 선금금 미반제액은 없는가?		
기성금 지급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가?		
	•목적물을 인수한 날(해당공종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는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는가? (가압류 등에 따른 지급유보 사항 체크)		
	•하도급대금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것이 있는가?		
부당감액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한 것이 있는가?		
	•입찰시 하도급 공과잡비율을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한 것이 있는가?		
	•당초 계약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것이 있는가?		
물품구매강제	•입찰 후 기계약된 공종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장비 등을 지정하여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이 있는가?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 있는가?		
기술자료 제공요구	•정당한 사유 입증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이 있는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기술자료 요구전 발부하였는가?		
비밀유지계약체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였는가?		
부당한 대물변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한 것이 있는가?		

	부당한 경영간섭	•직원교체 요구는 정당성 소명이 어려우므로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명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는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매출정보, 영업정보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한 것이 있는가?		
	보복조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범위반 신고/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었는가?		
타절	부당위탁취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목적물에 대한 수령/인수를 거부/지연한 것이 있는가?		

■ 내부거래 적정성 점검

*점검결과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 요약기술 요
 (분기 내 본부 CP 담당 및 컴플라이언스RM팀에 대규모상품/용역거래, 자금, 인력, 자산거래, 상업상 자기거래 등에 대해 내부거래협의제, 내부거래 적정성 팀협의, ESG위원회에 인건심의/협의한 경우 해당실적에 대해 요약기재요망)
 이상없는 경우 "특이사항 없음" 기재 요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기 요
 *조치내용 : 점검결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조치가 있는 경우 내용기재 요.

구분		Check -Point		조치내용
상품·용역	상품 및 용역 거래 일반	•거래 대가로 해당 산업(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이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다음의 사정이 존재하는가? -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열회사가 계열회사 간 거래물량으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는가? - 계열회사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열회사가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사업위험이 제거되는가?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였는가?		
	매출채권 및 지연이자 미회수 또는 회수 지연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 단가 보다 높거나 낮게 광고를 집행하였는가?		
	광고 관련	•회사가 광고비를 받고 제3자의 서비스를 노출할 수 있는 공간에 아무런 대가없이 계열회사의 서비스를 노출해 주었는가?		
	공동 프로모션/마케팅 관련	•계열회사와 공동 프로모션/마케팅을 하면서 비계열사라면 부담시켰을 비용을 면제하거나 혹은 그 보다 적거나 크게 부담시켰는가?		
	IT 시스템 관련	•계열사에게 IT시스템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정상적인 수준 보다 높거나 낮게 받았는가?		
	인사, 노무 등 관리서비스 및 C/S 서비스 관련	•인사, 노무 등 관리서비스 혹은 고객불만처리를 위한 C/S 서비스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비용을 감안한 적절한 대가 보다 높거나 낮게 대가를 받았는가?		
서비스 노출	•플랫폼에 비계열사의 서비스를 유료로 노출하는 반면 계열사의 서비스는 무료 혹은 비계열사가 지급하는 대가보다 더 낮은 대가를 받고 노출하였는가?			
자금 차입 및 대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거래 일반	•해당 자금거래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당해 계열회사와 독립된 금융기관 간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이자(지연이자 포함) 등 대가가 적절히 수취되고 있는가?		
	대여금	•계열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할 때의 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차입하였는가?		
	담보 또는 보증	•계열회사가 외부차입이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정당한 대가 없이 담보나 보증(보증유사행위 포함)을 제공해 주었는가?		
	우회거래	•계열회사가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 외부차입을 함에 있어서 대출자와 다른 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계열회사의 차입금리를 낮추어 주었는가?		
		•계열회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회사의 인력을 파견 발령하는 등 제공한 후 인건비는 회사가 부담하였는가?		

인력거래	인력 거래 일반	•회사의 직원이 당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계열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 그 인력비용을 계열회사와 적절히 분배하지 않았는가?		
		•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비계열사관계에서 형성되었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는가?		
자산 거래 (유가증권, 부동산, 무 체재산권 등)	자산거래 일반	•거래 대상인 유가증권 등 자산의 시장가격 또는 비계열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거래가 존재할 경우 해당 거래의 가격을 확인하여 비교하였는가?		
	신주 인수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계열사의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비계열사라면 지급하였을 가격 보다 높거나(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 한함) 혹은 낮게 지급하였는가?		
	어음 고가매입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회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높거나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였는가?		
		•계열회사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높거나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는가?		
	채권 매입	•비계열사가 인수 또는 매입한 할인율 보다 높거나 낮은 금리로 매입하거나 인수 하였는가?		
	부동산 매수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고가 혹은 저가로 계열사로부터 매수하였는가?		
	무체재산권 양도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결과를 정당한 대가 없이 계열회사에게 귀속하게 하거나 양도하였는가?		
	부동산 임대차	•계열회사 사이에 공장, 매장, 사무실 등을 임대차하면서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 수준보다 높거나 낮게 임대료를 정하였는가?		
기타	•기타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자산 거래시 시장에서의 거래가격과의 비교가 이루어졌는가? 시장 거래가격보다 고가 혹은 저가로 거래한 경우, 그러한 거래조건 설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자기거래 (상법 398조)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자기거래 해당여부	• 이사와 회사의 거래, 주요주주와 회사의 거래,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관계자와 회사의 거래시 (상품·용역 거래 / 자금 거래 / 자산 거래 / 유가증권 거래 등), 상법(398조)상 자기거래에 해당될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받는 절차를 준비하고 이행하였는가?		
	포괄 한도승인	• 이해상반의 우려가 적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종의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총액 및 그 기간에 제한을 두어 전년말에 포괄 한도승인 신청(년 1회) 시 포함시켰는가?		
		• 포괄 한도승인 신청 시, 매입/매출, 거래상대방, 계약기간, 금액, 수익사유, 금액산정 기준 등 세부사항 작성 시, 금액은 계약 총액이 아닌, 해당연도 기준 거래 예상액으로 작성하였는가?		
개별 승인	개별 승인	• 포괄 한도승인 대상이 아닌 공사도급 등 개별거래에 대한 최초/변경/정산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발생 및 계약체결 이전에 개별승인을 신청하였는가?		
		• 개별승인 신청 시,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금액, 기간 등만 개략적인 예상치로 작성하되, 계약의 내용이 구체화 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이사회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고, 금액은 계약 총액 기준으로 작성하였는가?		

표시광고법 준수 점검

*점검결과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 요약기술 요
 이상없는 경우 "특이사항 없음" 기재 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기 요
 *조치내용 : 점검결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조치가 있는 경우 내용기재 요

구분	Check -Point	점검결과	조치내용	
공통	분양 개요	•시공 시행, 분양대행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분양 도는 운영 업무가 어떤 업체에 귀속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		
		•건물의 공사 상황이나 입주 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주소나 위치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교통 환경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 시간을 새벽이나 한밤중이 아닌 통상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는가?		
		•교통 환경과 관련해 그 명확한 수단(지하철, 버스, 차량이동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는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 않았는가?		
	생활 인프라	•주변 상권의 긍정적 요소를 홍보할 경우, 객관적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공익 또는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사실과 다르게 가깝다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등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 않았는가?		
		•조감도를 활용한 표시광고 시에 일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시설물을 표시하지 않았는가?		
		•조감도를 활용한 표시광고 시에 현재는 이용할 수 없지만 장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계획' 또는 '예정'으로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개발 호재	•계획 단계의 비전이나 막연한 추측 상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홍보하지는 않았는가?		
		•확정/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지 않았는가?		
	브랜드	•당사의 분양 책임이 없는 현장에서 당사의 사명 또는 CI를 당사와 협의없이 활용 중인가?		
		•도급 계약 상에서 당사의 사명 및 CI를 분양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당사가 분양 또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현장에서 당사의 사명이나 CI가 크기, 색상 등의 면에서 현저히 눈에 띄게 표기되어, 마치 당사가 분양 또는 운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되지는 않았는가?		
	설계정보	•건축물의 구조, 재료,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지 않았는가?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지 않았는가?		
	설계 정보	•건물인증 (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여부 또는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지 않았는가?		
	대금 납부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였는가?		
		•분양가격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지 않았는가?		
•분양 대금 납입조건 및 방법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지 않았는가?				
•대출내용 및 조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지 않았는가?				
투자 가치	•미래의 자산가치에 대해 홍보할 때, 객관적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객관적 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지 않았는가?			
청약 정보	•분양 자격 및 규모, 당첨자 결정방법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홍보한 내용이 있는가?			
기타 정보	•부대시설이나 별도 계약 품목 또는 그 설비나 공사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지 않았는가?			
	•전세가에 대해 사실과 들게 홍보하지 않았는가?			
	•토지 분할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음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지 않았는가?			
	•분양 목적물 외에 별도의 추가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지 않았는가?			
	•분양물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고, '백화점', '특급호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설립운영 가능한 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등기면적에 전용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이나 서비스면적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주택	•공급면적에 대해 서비스 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면적', '총면적', '---평형' 등으로 표기해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과장하지 않았는가?		
	•주택전시관에 실제 사용될 제품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기존에 주택전시관에 설치됐던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다고 표시광고 했는가?		
	•마감재가 변경될 경우 실제의 것과 현저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가?		
상가	•업종에 제한이 없는 현장에서 특정 업종에 제한을 두는 것과 같은 허위광고를 하지 않았는가?		
	•은행, 극장 등 대규모 시설의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지 않았는가?		
	•점포별 또는 매장별로 분양면적을 표기할 경우 전용면적을 명확히 표기하였는가?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 분양광고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혔는가?		
	•소유권, 임차권, 기타권리설정, 이전등기 등 분양절차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지 않았는가?		
<p>제한사항의 기재</p> <p>(* 제한사항 :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의 내용, 적용범위 등을 제한하기 위해 각주, 별표, 괄호 등 형태로 덧붙여서 제시되는 사항)</p>	•제한사항의 내용이 명확하고, 소비자의 눈에 띄게 디자인 되었는가?		
	•광고홍보 매체별로 각 특성에 맞게 제한사항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가?		
	•표시광고 자체에 거짓이나 허위 사실은 없는가?		
	•제한사항이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쉽게 큰 크기로,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게 기재되었으며, 다른 내용에 묻히지는 않았는가?		
	•제한사항이 주된 표시광고 메시지와 가까우며, 소비자들이 읽기 쉬운 위치에 제시되어 있는가?		
	•제한사항의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발생여부 : 발생한 경우 'O'로 표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공시/신고여부 : 공시/신고사항인 경우 'O'로 표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점검결과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 요약기술 요
 (컴플라이언스RM팀과 공시, 신고 관련하여 협의/자문 요청한 사항은 기재요망)
 이상없는 경우 "특이사항 없음" 기재 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기 요
 *조치내용 : 점검결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조치가 있는 경우 내용기재 요.
 ex) 발생일, 공시/신고일 등

■ 기업집단 규제 준수 점검

구분		Check -Point		발생 여부	공시/신고 대상여부	점검결과	조치내용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사전 공시)	자본총계(또는 자본금 중 Max) 5% 이상 혹은 50억 이상 거래경우 이사회 의결 &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관계인과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동일인, 동일인관련자(친족, 계열회사, 임원, 비영리법인 등)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계열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주)대림, 캠펙, 대림피앤피, 대림에이앤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7일 이내 공시) *(신설)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회사는 제외 (특수관계인 20% 이상 출자사는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변동, 임원 변동 등 •최대주주 외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 (신설) 재무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자산 및 타법인주식의 취득/처분, 증여/수증,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면제/인수, 증자/감자, 전환사채 발행 등 경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양수도/임대, 합병/분할, 주식교환/이전, 해산, 회생절차/관리절차 개시 등 				
	기업집단현황 공시 (분기별 공시)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명, 대표 등 개요, 재무현황, 손익현황, 해외계열회사 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해외회사 현황 공시 신설: 동일인 및 친족이 20%이상 보유한 해외계열회사 				
		임원 및 이사회 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 성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 관계 등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 				
		주식소유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지분현황,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특수관계인 거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차입, 자금대여, 유가증권거래, 상품, 용역거래, 자산거래, 채권·채무 잔액, 채무보증, 담보제공 현황,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등 				
		순환출자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환출자 및 변동 내역 				
	계열사 채무보증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사의 여신을 보증하는 행위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지급보증, 채무인수 등 / 직접 보증은 해당 사항 없음) •제한제외대상 : 산업합리화, 해외건설, 기술개발자금, SOC 보증 등 					
	계열편입/제외 신고 (발생시 사후신고)	지분율 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주식총수(의결권 有) 30%이상소유+ 최대출자자 경우 				
		지배력 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 선임 또는 50% 이상임원 선임, 임원겸임, 채무보증, 브랜드 공유 등) 				
기업결합 신고 (발생시 사전신고) *(신설) 상대사 자산총액(매출액) 300억 이하 경우, 기업결합 대가로 지급/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 상대사가 월 100만명이상 상품/용역 판매/제공 등 신고의무 발생	주식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주식총수(의결권 有)의 20%(상장 15%)이상 취득 또는 추가 취득 +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합병 / 영업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회사설립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임원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 겸임하는 경우(사후신고)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출자 혹은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주식 변동 등 						
기타 신고사항							